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,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, 시행규칙 제68조 [별표 1]¹⁾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

1)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상수도·하수도 건설공사 중 1)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7년, 2)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는 3년

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²⁾을 정하여야 하며,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.

1. 광주광역시 북구(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)

광주광역시 북구 ○○과는 ‘○○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’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014. 1. 16.~2015. 4. 27. 기간 중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. 이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(1년 이상 10년 이하)을 준수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,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함에도,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및 하자검사를 아래 [표1]과 같이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.

[표1]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및 하자검사 부적정 현황

2)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율(시행규칙 제70조) : 1. 철도, 댐, 터널, 철강교설치, 발전설비, 교량,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(100분의 5), 3. 관개수로, 도로(포장공사를 포함한다), 매립, 상하수도관로, 하천, 일반건축 등 공사(100분의 3)

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	준공검사일	대상공종	담보책임존속기간		하자검사		하자보수보증금율	
			법적 기준	존속기간 운영	법적 기준	복구	법적기준	하자보 수보증 금율
○○동	2014. 1. 16	처리장	7년	3년	2회/ 년	14, 15년 각1회 미실시	5/100	3/100
○○동(1차)	2014. 1. 21	처리장	7년	3년		15년 1회 미실시	5/100	3/100
○○동(2차)	2014. 4. 17	처리장				실시완료	5/100	3/100
○○동 (1,2차)	2014. 4. 17	하수관로	3년	3년		14, 15년 각1회 미실시	3/100	3/100
○○동(1차)	2014. 7. 7	하수관로				실시완료	3/100	3/100
○○동(2차)	2015. 4. 27	하수관로				15년 1회 미실시	3/100	3/100

※ 광주광역시 복구 제출자료 재구성

2. 광주광역시 광산구(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)

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과는 ‘○○동 ○○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’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014. 7. 29.~2015. 6. 28. 기간 중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. 이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(1년 이상 10년 이하)을 준수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,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함에도,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및 하자검사를 아래 [표2]와 같이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.

[표2]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및 하자검사 부적정 현황

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	준공검사일	대상공종	담보책임존속기간		하자검사		하자보수보증금율	
			법적기준	존속기간 운영	법적기준	광산구청	법적기준	하자보수 보증금율
○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7년	3년	2회/년	미실시	5/100	5/100
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					5/100
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					5/100
○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					5/100
○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					5/100
○○동 ○○	2014. 7. 29	처리장						5/100
○○동 ○○○	2015. 8. 28	처리장		2년				3/100

※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

광주광역시 북구청장, 광산구청장은

[시정] 하자보수보증서의 담보책임존속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징구하고,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이행하며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